

# 기후위기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9-19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5. 18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시행으로 ‘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’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가 회장이 되는 법적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활동이 미비한 유사 기능의 기후위기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및 제175조(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)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##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 및 제175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5조  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## 주요내용

- 탈퇴사유
  - 기능이 유사한 행정협의회 조정
    - 유사 기능의 ‘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’가 법적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‘기후위기 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’ 탈퇴
  - 업무내실화 및 예산절감
    - 불필요한 행정협의회 탈퇴로 업무 내실화 및 예산 절감(연 700만원)
- 추진경과
  - 안산시 협의회 탈퇴계획 방침 결재 : 2022. 12. 29.
  - 탈퇴 신청서 제출 : 2022. 12. 29.
  - 탈퇴 신청서 접수 및 자격상실 : 2022. 12. 30.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2】

기타 참고사항

○ 기후위기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현황 : 【붙임 3】

○ 기후위기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: 【붙임 4】